

의안번호	2206131
의 퇴 인	신정훈의원
회 답 일	2024. 12. 26.
추 계 번호	24D5603

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치안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, 치안산업 관련 통계 작성 등을 실시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4억 2,600만원, 2030년 4억 4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9억 9,600만원(연평균 3억 9,9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치안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(안 제5조)	52	—	—	—	—	52	10
치안산업 관련 통계 작성 등 (안 제22조)	374	381	389	396	404	1,944	389
합계	426	381	389	396	404	1,996	399

주: 1.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 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2.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치안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(안 제5조), 치안산업 관련 통계 작성 등(안 제22조)에 한하여 추계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및 제6조(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	경찰청장은 치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함
		경찰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
2	안 제7조(전문인력의 양성)	경찰청장은 치안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연구소·대학, 그 밖의 교육기관을 치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3	안 제8조(치안장비등의 표준화) 및 제9조(치안장비의 보급 확대)	경찰청장은 치안장비 등의 표준화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, 전문기관에 대하여 위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을 할 수 있음 경찰청장은 치안장비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
4	안 제10조(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 적용 품목 확인) 및 안 제11조(신기술품목의 인증)	(안 제10조) 경찰청장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·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신기술로 인증할 수 있음 (안 제11조) 경찰청장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장비를 혁신적으로 개선·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장비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장비로서 치안·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품목을 신기술품목으로 인증할 수 있음
5	안 제18조(해외시장 진출 지원)부터 안 제20조(해외 우수연구개발기관의 유치 촉진)까지	(안 제18조) 경찰청장은 치안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치안산업 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(안 제19조) 경찰청장은 치안기술 개발 주체가 해외 우수 전문인력을 유치·활용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활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금지원 등의 시책을 수립·추진할 수 있음 (안 제20조)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안산업 관련 외국의 우수 연구개발기관(이하 “해외연구기관”이라 한다)의 유치를 위하여 참여지원, 연수·훈련 및 고용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
6	안 제22조(치안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·보급 및 이용)	경찰청장은 치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치안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·보급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및 제6조(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	○	-
2	안 제7조(전문인력의 양성)	X	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위탁 여부, 위탁기관 지정에 따른 경비 지원 항목의 범위 및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
3	안 제8조(치안장비등의 표준화) 및 제9조(치안장비의 보급 확대)	X	치안장비 표준화 관련 기존 사업의 확대 여부 및 범위, 보급 확대가 필요한 치안장비의 종류와 평균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
4	안 제10조(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 적용 품목 확인) 및 안 제11조(신기술품목의 인증)	X	신기술 인증 등을 위한 관련 인력의 증원 여부,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
5	안 제18조(해외시장 진출 지원)부터 안 제20조(해외 우수연구개발기관의 유치 촉진)까지	X	치안사업의 해외시장 진출 관련 기존 유사사업의 확대 여부 및 범위, 해외 우수 인력 및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내용 및 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
6	안 제22조(치안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·보급 및 이용)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치안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(안 제5조), 치안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·보급 및 이용(안 제22조)에 한하여 추계
 - 안 제22조의 경우 치안산업 관련 통계 작성 등을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-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¹⁾
-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치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(안 제5조)

- 본 추계에서는 치안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
- 제정안에 따른 치안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5,200만원으로 추정
 - 경찰청의 2024년 예산에 따르면, 사이버치안분야 정책연구용역으로 5,000만원을 편성하였고,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면 2026년 5,200만원으로 예상

1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(2024.10)

	2023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~
소비자물가상승률(CPI)	3.6%	2.5%	2.1%	2.0%	2.0%	2.0%	2.0%

나. 치안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·보급 및 이용(안 제22조)

- 본 추계에서는 치안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·보급 및 이용을 위하여 연간 1회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
- 제정안에 따른 치안산업 관련 통계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억 7,400만원, 2030년 4억 400만원으로 추정
 - 유사사례인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3억 5,000만원이고, 동 금액에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

[표 2] 실태조사 비용 추정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
실태조사	374	381	389	396	404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다. 추계결과

- 치안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, 치안산업 관련 통계 작성 등을 실시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4억 2,600만원, 2030년 4억 4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9억 9,6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

[표 3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치안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	52	—	—	—	—	52
치안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등	374	381	389	396	404	1,944
합계	426	381	389	396	404	1,996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nabo.go.kr